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6. 6. 28(화) 석간부터

배포

2016. 6. 27(월)

책임자

사회안전망연구실
이태열 실장(3775-9010)

작성자

류건식 선임연구위원(3775-9013)
강성호 연구위원(3775-9033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5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보험산업의 연금대책,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은 6월 28일(화)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『보험산업의 연금대책, 어떻게 할 것인가』라는 주제로 경영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-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(제 1주제 발표)은 『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대응』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고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함.
 -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(제 2주제 발표)은 『개인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대응-정년연장을 중심으로』 주제발표를 통해 60세 정년연장으로 증가된 노후준비 기회를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함.
 - 이후 관련부처, 언론, 학계, 보험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됨.

< 제 1주제 :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대응 >

최근 퇴직연금 환경변화를 보험회사의 위상 강화 기회로

- 저금리기조의 장기화, 임금피크제 도입가시화,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퇴직연금시장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.
-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시화되면 DB형 퇴직

연금중심에서 DC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될 것임.

- 또한 퇴직연금 가입의무화,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의 **사적연금활성화 대책***은 시장규모의 확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.

* 기존 정부대책이 대부분 단편적인 대책이었다면 2014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활성화대책은 퇴직연금시장을 개편할 만큼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큼.

□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안을 모색해 퇴직연금시장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.

- 왜냐하면 퇴직연금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**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***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위상이 미흡하기 때문임.

* 2015년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를 상회할 만큼 성장하였지만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54.0%에서 2015년 31.8% 수준임.

-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경험한 **미·일 보험사들의 환경변화 대응사례**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(<표 1> 참조).

<표 1> 미·일 보험사의 환경변화 대응

가입단계	퇴직연금가입패턴 변화, 서비스차별화 등을 통한 가입유인	제도가입 패턴전환 가입서비스 차별화 퇴직연금 연계상품 개발	▪ DB형 외 CB, DC, IRA 가입 유도 ▪ 중소기업 중시 번들형 서비스 강화 ▪ 보험사 특성을 가미한 상품 연계
운용단계	업무 및 상품제휴 등을 통해 운용능력 강화	업무제휴 등 전략적 제휴 리스크 중심 자산운용	▪ 전략적 제휴 : 전문기관 이미지 제고 ▪ 부채 특성을 고려한 자산배분 다양화 ▪ 라이프사이클펀드, 다폴트펀드 등
배분단계	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등을 통한 지급의 차별화	퇴직금부 배분능력 제고	▪ 체감형, 체증형 등 지급방식 강화 ▪ 종신휘 연금의 적극 활용

□ 해외 보험사의 경우 **연금가입단계**에서는 DC형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거나 서비스차별화를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추세임.

- **연금운용단계**에서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를 하고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한 자산운용 등을 통해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있음.
- 반면 **적립금지급단계**에서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적립금 배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
중소기업시장과 DC형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절실

-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, 해외 보험사의 대응사례를 종합할 때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.
- 첫째, 법인영업과 개인영업과의 연계를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일괄서비스*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**을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됨.

* 일괄서비스는 제도가입부터 자산관리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적합하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임.

** 30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7.3%(도입사업장 수 : 303,213개소)에 불과해 보험사의 강점인 서비스차별화를 통해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.

- 또한 퇴직연금시장환경이 DC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*** 등을 통해 DC형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요구됨.

*** 일본생명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2015년 현재 DC형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(금융그룹제외)를 보이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.

- 둘째,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보장성 기능을 조합한 상품, 수탁자배상 책임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연계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됨.

- 보험회사의 경우 소득(퇴직연금)과 건강(건강보험)을 연계한 상품개발*이 가능하므로 상품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- 퇴직연금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, 퇴직연금에 건강보장을 조합한 상품, 수탁자배상 책임보험상품**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.

* 손보재팬, 아이오이 손보 등 일본 손해보험사는 적립형 상해보험을 개발하여 DC형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용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음.

**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은 수탁자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가입자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하는 보험으로 미국은 AIG 등이, 일본은 손보재팬 등이 판매함.

- 셋째, 개인 재무행태를 반영한 다양한 옵션 연금상품 개발* 등으로 퇴직급부 배분(지급)시장에서의 경쟁력**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됨.

- 최근 정부는 연금세제혜택을 통해 연금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도록 하고 있어 연금을 중심으로 한 배분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임.

- 이에 다양한 연금상품의 설계,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연금전문기관으로 보험회사 이미지를 보다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- * 현재는 연금수령이후 일정기간 연금수령을 거치할 수 있는 Stop & Go 옵션상품의 경우 연금수령 유보기간에 대해 적립자산은 공시변동이율로 부리되는 한계가 있어 연금수령자의 투자성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.
- ** 종신연금 등을 통해 퇴직금부의 종신연금화가 가능하고 연금지급방식 다양화로 연금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보다 경쟁력 우위가 있다고 판단됨.

< 제 2주제 : 개인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대응 >

정년연장을 개인연금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

-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라 **정년의무화**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**적정 노후소득**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예상됨.
-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,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**60세 정년**으로 법제화됨.
-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**합산소득대체율은 35.7%(임금피크적용)**으로 추정되어 **적정노후소득대체율(70% 수준)**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.
- 한편, 정년연장에 따라 근로소득은 평균적으로 **12.1%(1,874천원→2,101천원)** 증가하여 **노후준비 여력이 발생**할 것으로 전망됨.

<표 1> 정년연장 전후의 합산연금소득대체율

(단위: %, 천원)

구분		연장전 (A)	연장후	
			피크전(B)	피크후(C)
국민+퇴직연금	단기 ¹⁾	24.7	28.2 (3.5)*	26.8 (2.1)*
	중·장기 ²⁾	30.4	37.1 (6.7)*	35.7 (5.3)*
근로소득수준		1,874	2,101	-

주: 1) 2016년 54~59세(정년연장기간이 1년~6년으로 다름)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 2) 2021년 이후는 정년연장 효과가 모두 6년으로 동일함 3) () *안은 정년연장 전후의 소득대체율 변화(%p)

- 이에 따라 **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증형 크레바스연금(가칭)* 및 공사연계연금(가칭)****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.

* 정년연장 대상자(예, 54세~59세)에게 공적연금가입을 조건으로 현행 개인연금과 별개로 세제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(신)개인연금을 의미

** 인증형 크레바스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(예, 전연령계층)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소득계층별 차등화된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(신)개인연금을 의미

- (신)개인연금을 현행 연금저축과 같이 세액공제율 12%로 하고 정년연장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고, 이들이 **20년간** 수급하는 것으로

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 1.7%*(임금피크 적용)로 추정됨.

* 국민연금 수급을 연결하는 가교연금(약 5년 동안 수령) 형태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할 경우 6.6% (임금피크 적용)로 추정되며, 이는 국민연금 법정 소득대체율을 40%에서 50%로 올리자는 의견이 엄청난 재정문제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소득보장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음.

- 현실적으로 (신)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(예를 들어, 50세부터 혹은 전연령층) 혹은 세제혜택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.

□ 세제혜택이 부여된 (신)개인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혜택 제공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음.

- 노후에 빈곤층이 될 우려가 있는 54~59세(50세~59세) 근로자가 (신)개인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빈곤을 탈출하는 비율은 2.4%(3.5%)로 나타남.
- 이를 고려할 때 노인빈곤율*은 1.3%p 감소**할 것으로 추정됨.

* '노인빈곤자 수'(중위소득의 50%이하 소득을 가진 노인의 수)를 '전체 노인의 수'로 나눈 비율

** 투입 재원대비 빈곤 완화효과를 기초연금제도와 비교한 결과, 기초연금은 11조 원으로 빈곤율을 10.4%p 감소, (신)개인연금은 4,507~6,531천억으로 빈곤율을 1.3%p 감소(49.6%→48.3%)

개인연금법 제정은 제도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

□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 제정은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- 현재 법(안)에 의하면 세제 적격 및 비적격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.
- 즉, 세제적격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연금계좌로 관리되고 있지만, 세제비적격연금은 장기저축성 보험(10년 이상 가입 시 보험차익 비과세)에 근거하고 있어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□ 따라서, 개인연금법 제정은 연금성격 및 도입취지를 고려하되 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